

예 산 총 칙

2019년도 추가경정 제3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165,738,615	64,972,158
일반회계	1,640,840,632	49,225,219
특별회계	524,897,983	15,746,939
공기업특별회계	289,720,768	8,691,623
상수도사업	81,372,427	2,441,173
하수도사업	208,348,341	6,250,450
기타특별회계	235,177,215	7,055,316
공유재산관리	87,271,391	2,618,142
의료급여기금	8,741,126	262,234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기금운영	1,824,000	54,72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1,252,251	37,568
교통사업	54,750,852	1,642,526
철도건설사업	5,983,761	179,513
폐기물처리시설	5,549,609	166,488
도시재정비촉진	1,303,027	39,091
도시개발	19,472,789	584,184
기반시설 설치	4,539,490	136,185
문화시설건립	29,250,000	877,500
도시재생	15,238,919	457,168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와 같다.
단, 각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으로 한다.

제 3 조 2019년도 재무부담행위는 별첨 '재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2019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993,288천원으로 한다.

(1) 일반예비비 3,993,288천원

(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0원

제 7 조 2019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47,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지방채상환(원리금 등), 재해 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